

## 학교법인우송학원 이사회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7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시 : 2025년 6월 26일(목) 12:00-12:40(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6월 16일)

2. 장소 : 학교법인우송학원 회의실(솔브릿지 12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참석 임원

-이사(6인) : 김종현, 김성경, 이달영, 원종윤, 김태한, 최현식

-감사(2인) : 임성빈, 장병식

○불참 임원

-이사(1인) : 이기재

○배석자 : 양태송(간사)

4. 안건 :

(1)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이사)

(3)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재임용, 겸임 임용)

-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5. 회의내용

이사 의결정족수 참석으로 부의안 결의에 대해 적법 성립되다.

-김종현이사장:

개회를 선언하고 부의안 (1)호 내지 (3)호에 대하여 심의의결코저 한다고 안건을 소개하다.

(1)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1)호인 법인 정관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간사가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배부한 자료를 안내하다.

-간사:

정관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규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관 제40조 휴직의 사유에 「사립학교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의 사유가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등에 휴직의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같은 법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공립 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신분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정관 제41조 및 제43조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이어서, 우송정보대학 직제 중 학사1,2부총장 및 산학협력부총장을 신설하고, 관리처장 직은 폐지하는 내용 등의 정관 제78조 및 제79조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이사전원

<간서명>		
-------	---	---

정관 신·구대조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다.

-이달영이사: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휴직의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출산 및 휴가 등으로 인한 여성교원의 휴직에 대한 처우 또한 관련 법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관 제40조, 제41조, 제43조를 원안대로 변경할 것과, 대학 직제 변경안은 우송정보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발전에 관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위한 직제개편으로 원안대로 변경할 것을 동의하다.

-원종윤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며 다른 이사님들의 찬성 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김종현이사장: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1)호인 법인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2)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이사)

-김종현이사장:

부의안 (2)호인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인 이재하이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의를 표한 바,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이재하이사의 후임 이사로 적절한 분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김성경이사:

이재하이사님은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이사직을 수행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시게 되어 안타깝다며, 후임 이사로 한양희님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달영이사:

제의에 찬성한다며, 한양희님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우송학원 이사직을 역임하신 분으로 이사 재임 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우리학원 발전에 기여하였다며, 한양희님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

-원종윤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추천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재하이사 후임으로 한양희님의 이사 선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며 다른 이사님들의 찬성 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김종현이사장:

〈간서명〉	김종현 이사장	이달영
-------	---------	-----

참석 이사 전원 찬성에 따라 이재하이사 후임에 한양희님이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고, 임기는 임원 선임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서류준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8월 8일부터 정관 제19조에 의거 전임 이사의 잔임기간인 2026년 5월 9일로 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안내하다.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비고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	한양희	50.10.26.	25.08.08. ~ 26.05.09.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16-14, 9동 926호(청운벽산빌라)	신임

**(3)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재임용, 겸임 임용)**

부의안 (3)호인 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송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에서 2025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 및 겸임 임용에 대한 제청이 있어 이를 의결코저 한다고 말하고, 간사에게 대학별 교원 임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간사:

배부해 드린 교원 임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이사들에게 말한 후 설명을 하다.

○ 우송대학교 교원 임용(재임용 및 겸임 임용)

2025년 8월 말일자로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재임용 대상자는 내국인 계약제 전임교원 7명, 정년트랙 산학중점교원 1명, 비정년 교육전담교원 1명, 비정년 산학중점교원 13명, SW중심대학사업단 산학중점교원 1명, 전공 담당 외국인교원 4명, 비정년 어학담당 외국인교원 24명으로 재임용 계약에서 제외 제청된 교원은 없으나, 재임용 대상 교원 중 비정년 산학중점교원 3명은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일부 미달되어 조건부 재임용계약 대상이며, 그 외에는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른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어서, 바이오헬스혁신융합사업단 사업추진을 위해 겸임 임용 제청된 비정년 산학중점교원 1명 및 RISE사업단 사업추진을 위해 겸임 임용 제청된 비정년 산학중점교원 14명에 대해 안내하다.

○ 우송정보대학 교원 임용(재임용)

2025년 8월 말일자로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재임용 대상자는 내국인 계약제 전임교원 3명, 비정년 산학중점교원 2명, 전공담당 외국인교원 3명, 어학담당 외국인교원 3명으로 재임용 계약에서 제외 제청된 교원은 없으나, 재임용 대상 교원 중 내국인 계약제 전임교원 1명은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일부 미달되어 조건부 재임용계약 대상이며, 그 외에는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사전원

대학 교원 임용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

-김태한이사:

우송대학교 및 우송정보대학의 교원 임용 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재임용 대상자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각 영역별 평가 기준에 따른 재임용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평가영역에서 일부 미달된 교원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부분을 더 노력하여 충족하도록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별 심의를 절차를 거친 적절한 임용제청으로 보이며, 겸임 임용의 경우 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위해 전문 경력을 갖춘 교원을 겸임임용

<간서명>		
-------	---	---

하는 것이므로 각 대학의 재임용과 겸임 임용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다.

-최현식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김종현이사장:

대학교원 재임용 및 겸임 임용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며 다른 이사님들의 찬성 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김종현이사장: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부의안 (3)호인 대학교원 임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6. 간서명 대표자 선임

-김종현이사장:

본 건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에는 참석 임원 전원 또는 대표 3인을 선임하여 서명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이사장님과 김성경이사님, 이달영이사님을 간서명 대표로 할 것을 제의하다.

-참석이사 전원:

제의에 찬성하다.

-김종현이사장:

이사회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으로 본인과 김성경이사님, 이달영이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 7. 폐회선언

-김종현이사장: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김종현이사장

이달영이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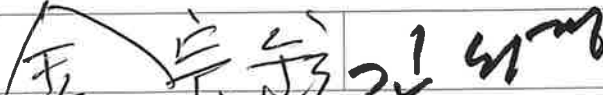

2025. 6. 26

학교법인우송학원	이 사 장	김 종 현	金宗憲
	이 사	김 성 경	金成敬
	"	이 달 영	李達榮
	"	김 태 한	金泰翰
	"	원 종 윤	元宗潤
	"	최 현 식	崔現植
	감 사	임 성 빈	林成彬
	"	장 병 식	張炳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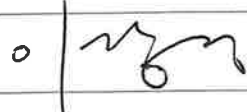
<붙임1>

##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정관	개정안	비 고
<p>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u>한다</u>.</p> <p>1~7호 (생략) &lt;신설&gt;</p> <p>8~10호 (생략) &lt;신설&gt;</p>	<p>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u>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1~7호 (현행과 같음) <u>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u></p> <p>8~10호 (현행과 같음) <u>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u></p>	<p>사립학교법 제66조의4</p>
<p>제41조(휴직의 기간) (생략) 1~3호 (생략) 5~6 (생략) &lt;신설&gt;</p> <p>7~8호 (생략) <u>9. 제40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총장이 정한다.</u></p>	<p>제41조(휴직의 기간) (현행과 같음) 1~3호 (현행과 같음) 5~6호를 4~5호로 한다. (현행과 같음) <u>6. 제40조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u></p> <p>7~8호 (현행과 같음) 9. 제40조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정한다.</p>	<p>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p>
<p>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생략) &lt;신설&gt;</p> <p>② 제40조제2호 내지 <u>제10호</u>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40조제7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을 준용한다.</u></p> <p><u>②항을 ③으로 하고, 제40조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사립학교법 제59조제3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p>

<간서명>		
-------	---	---

현행 정관	개정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전문대학</b></p> <p>제78조(총장 등) ①~②(생략)  <u>③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u></p> <p><u>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절 전문대학</b></p> <p>제78조(총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대학에 부총장과 학사1,2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과 학사1,2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 산학협력부총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u>  <u>④각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 학사1,2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u></p>	<p>대학 직제개편</p>
<p>제79조(하부조직) ① (생략)  <u>②총무처장 및 관리처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고 그 외의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u>          ③ (생략)</p>	<p>제79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u>②총무처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하고 그 외의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u>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u></p>	

〈간서명〉		
-------	---	---